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633호(號) 1932(昭和 7)년 6월 18일 토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32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74호(號)(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중(中) 1932(昭和 7)년 7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2(昭和 7)년 6월 18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별표(別表) 화물할인임률표(貨物割引賃率表) 국선(局線) 내(內) 발착(發著)의 부문[部] 및 국선(局線)과 사설철도선(私說鐵道線) 간(間) 발착(發著)의 부문[部] 및 국선(局線)과 사설철도선(私說鐵道線) 간(間) 발착(發著)의 부문[部] 품목란(品目欄) 중(中) 「소금[鹽]」을 「식염(食鹽: 정제염[精製鹽]을 포함[包含]함)」으로 개정(改正)함.